

주식회사 원카드 - 하나카드 주식회사

업무 제휴 계약서

2023.10

주식회사 원카드

하나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카드(이하 “제휴사”라 한다)와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제휴사”와 “카드사”가 “제휴기업카드”를 발행함에 있어 그에 관한 업무 내용, 업무범위, 수행방법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상호 협조함으로써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며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휴기업카드”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 “제휴사”와 “카드사”가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행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말한다. 본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기능 및 정의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휴기업회원”이라 함은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회원으로서 “카드사”의 “제휴기업카드” 입회절차에 따라 “제휴기업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사”로부터 입회가 승낙된 자를 말한다.
3. “카드사용자”란 “제휴기업회원”의 요청으로 “카드사”가 발급한 “공용카드”, “사용자지정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제휴기업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한다.

제 3 조 (제휴업무의 범위)

“제휴사”와 “카드사”는 다음의 업무를 제휴한다.

- ### 1. “제휴기업카드”의 회원모집 및 발급

단, “제휴사”는 법인카드 상담 등 신용카드 모집업무로 비취질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휴기업카드”의 기능 및 제휴서비스의 제공
3. “제휴기업카드”의 홍보 및 프로모션
4. 기타 상호 협의한 업무

제 4 조(제휴기업카드의 기재사항)

- ① “제휴기업카드”의 종류 및 명칭은 “제휴사”와 “카드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휴기업카드”의 명칭 및 디자인, 기재사항 등은 “카드사”의 국제카드사 기준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휴기업카드”의 명칭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 명칭 및 디자인 중 분쟁대상 부분을 지명한 일방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수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동 분쟁으로 인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제휴기업카드”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본 계약을 통해 발급된 모든 “제휴기업카드”의 사용이 종료되기까지 “제휴사”는 “제휴기업카드”의 명칭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카드사”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

제 5 조 (카드발급 및 관리)

- ① “제휴기업카드”의 발급대상은 “제휴사”와 “카드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카드사”의 카드 발급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② “제휴기업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제작, 발급, 발송과 관련한 제반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 ③ “제휴기업카드”의 발급 및 이용, 회원관리 등 카드 일반에 관한 업무처리는 “카드사”의 기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 6 조 (카드 연회비)

“제휴기업카드”의 연회비는 “카드사”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 7 조 (홍보물 제작)

- ① 홍보물이라 함은 “제휴기업카드”와 관련한 인쇄물, 인터넷 메일, 광고홍보물, 전자 메시지(SMS) 등으로 “제휴기업회원”에게 전달되는 모든 매체물을 말한다.
- ② 홍보물에 대한 내용 및 형식 등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카드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제휴사”는 자체 부담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카드사”와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사전 동의없이 제작하여 배포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수거 및 폐기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휴기업카드의 기능 및 서비스 제공범위)

- ① “카드사”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서비스를 “제휴기업회원”에게 제공한다.
- ② “제휴사”와 “카드사”는 공동 또는 각각 개발한 신규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회원모집 및 발전기금 등)

“카드사”는 회원모집시 신청인의 신분(본인여부)을 확인하고 “제휴기업카드”의 발급 및 신청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청서는 신청인의 자필로 기재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수정 또는 철회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및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카드사”가 “제휴사”에 지급하는 발전기금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속약정서에 의한다.

제 10 조 (비밀준수)

- ① “제휴사”와 “카드사”는 본 계약의 실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계약서 상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 ② “제휴사” 또는 “카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 또는 고객의 정보를 유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1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까지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지위승계)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에게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등이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된다. 단, 상대방은 합병회사 등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제휴사”와 “카드사”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해지를 원할 때에는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변경,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휴사”와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서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상호 합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해 상대방의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끼친 경우



5. 상대방이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지급정지, 지급보류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본 계약과 관련한 정부, 금융감독기관 등의 명령, 지시 또는 권고가 있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 행정명령, 행정지도 등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휴사”와 “카드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① “제휴사”와 “카드사”는 본 계약의 “제휴기업카드”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휴기업회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협력하기로 한다.
- ② “제휴사”와 “카드사”가 상호 교환하는 “제휴기업회원” 정보는 “제휴기업카드”의 발급과 제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제휴사”와 “카드사”는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16 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된 의무 등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 타)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휴사”와 “카드사”는 별도의 부속계약서 또는 특약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본 계약의 내용과 별도 부속계약서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부속계약 또는 특약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계약에 기인하여 별도로 체결한 부속계약서, 특약서, 합의서 등은 본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휴사”와 “카드사”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일

“제휴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주식회사 원카드

대표이사 이 정 현



“카드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호 성

